

## 교육전문대학원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규정

제 1차 개정 2022.8.12.  
2차 개정 2022.11.3.

규정 제785호  
규정 제788호  
규정 제81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온라인 학위과정)** 온라인 학위과정은 모든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.

**제3조(전공 및 정원)**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전공에서 운영하며, 대학원 총 정원 내에서 교육부에서 승인한 정원을 모집하여 운영한다. 다만, 교육부에서 정원 외 인원을 승인한 전공은 승인한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

**제4조(학기 운영)** 온라인 학위과정은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하되,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업 운영)** ① 교과목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,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 등을 포함한다.  
② 전체 수업의 20% 이상은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구성한다.  
③ 계절제 교과목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개강 전 사전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평가)** ① 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,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, 과제, 퀴즈, 발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평가는 원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7조(강의평가)** 강의 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고,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한다.

**제8조(타 전공 교과목 이수)**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타 전공 원격수업 교과목을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9조(원격교육 관리)**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운영·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칙<제785호, 2022.8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788호, 2022.11.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814호, 2023.6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